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監査報告書

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붙임

1.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2.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처장, 대학교 : 총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은 사학기관 내부 감사 업무처리 유의사항 별지를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의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	-	-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1	-	1	별첨 참조
4. 부속병원 관련	-	-	-	해당사항 없음
계	1	-	1	

- 붙임 1.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광운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6년 5월 7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사 왕영호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850 호)

감사 신혜성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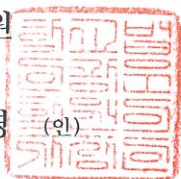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6년 5월 7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조선영 (인)



피감사 기관장

2026년 5월 7일

광운대학교

총장 윤도영 (인)




(별지 제1의1호 서식)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5 년 3 월 1 일부터 2026 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법인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 지적사항 없음</p>	
<p>피감사기관장 <u>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조선영</u> (인) </p>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광운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5 년 3 월 1 일부터 2026 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교비회계></p> <p>1. 추가경정예산 집행 절차 부적정</p> <p>광운대학교는 2025회계연도 중 본예산 확정 이후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일부 항목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예산을 우선 배정·집행하거나, 성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p> <p>이에 따라 향후 추가 예산 소요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배정·집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p> <p>2. 아이스링크 라커룸 외부사용자 관리 부적정</p> <p>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내 아이스링크 라커룸은 외부 사용자가 사용신청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물 설치, 시설 변경, 원상회복 범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p>특히 일부 사용자가 라커룸 내부 시설 변경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공사 범위, 비용부담 주체, 사용 종료 시 원상회복 범위 등에 관한 서면 승인이나 내부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계약 또는 사용허가 조건과 시설 변경 승인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p>	<p><교비회계></p> <p>1. 추가경정예산 집행 절차 부적정</p> <p>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를 근거로 추경 편성권 예비비를 관장하며, 성립예산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계정과목 과감도 등으로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 예산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여 성립예산 초과 집행 및 절차 미준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p> <p>2. 아이스링크 라커룸 외부사용자 관리 부적정</p> <p>동해문화예술관 운영위원의 승인을 거쳐 사전 시행 절차를 검토·개정하고, 라커룸 사용 절차 및 내부 환경 개선 기준 마련 등 관리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p>
<p>피감사기관장 <u>광운대학교 총장 윤도영</u></p> <p style="text-align: right;"></p>	

(교비회계)